

1. 개정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등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6.6.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보호 조치로서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동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급의료종사자가”를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로, “법정대리인으로부터”를 “법정대리인에게”로, “판단되는 때에는”을 “판단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④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행한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거부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1.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해자”라 한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일시적 업무 배제

나.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장소 변경

다. 그 밖에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의 배치

나.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 제한

3.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4.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피해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が必要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 ----- <u>동행한</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u>법정대리인에게</u> ----- ----- --- <u>판단하는 경우</u> ----- ----- -----. 1. <u>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u> 2. <u>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u> ④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행한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거부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

<신 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

치)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12
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응
급의료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라 한다)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피
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의사에 반
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1.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법 제
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해자”라 한다)로
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

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일시
적 업무 배제

나.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장소 변경

다. 그 밖에 피해응급의료종사
자를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
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제5조의2(생략)	<u>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조치</u> <u>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u> <u>안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u> <u>나.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u> <u>제한</u> <u>3.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피해에</u> <u>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u> <u>4.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의</u> <u>고발</u> <u>5.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u> <u>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u> <u>우 해당 고소에 대한 행정</u> <u>적·절차적 지원</u> <u>6.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또</u> <u>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u> <u>경우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u> <u>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u> <u>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u> <u>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u> <u>② 피해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u> <u>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u> <u>관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 각</u> <u>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제5조의3(현행 제5조의2와 같음)
-----------	---